

# 항공우주정책대학원 장학규정

**KAU**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24.11.4.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항공우주정책대학원 장학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(이하‘대학원’이라 한다)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심의기구 및 기능)** ① 장학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학원위원회(이하‘위원회’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

② 장학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장학금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
2.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, 수혜기간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
3.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항

**제3조(장학금의 구분 및 종류)** ① 장학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정액을 감면하거나 지급하는 교내장학금
2. 외부 기관 또는 독지가가 출연한 교외장학금

② 제1항에 의한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특별장학 : 대학 및 대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장학금
2. 공로장학 : 대학 및 대학원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학업정진을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
3. 교직원장학 : 본 대학교 교직원(정규직원, 행정사무직 및 무기근로계약직)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4. 원우회 간부장학 :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 원우회 간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5. 학비보조장학 : 업종 구분 없이 학업 정진을 위하여 해당 유관기관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6. 성적우수장학 :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7. 군위탁 장학 : 교육부장관이 교육을 의뢰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8. 교외장학 : 외부 장학재단, 공공기관, 기타 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
9. 외국인특별장학 : 외국인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10. 기타장학 :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에 의해 지급하는 장학금

**제4조(지급대상)** ① 장학금 지급 대상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에 정규등록(연구등록생 제외, 계절수업 등록생 포함)한 대학원생으로 한다.

② 장학종류별 지급대상은 <별표 1>과 같다.

**제5조(장학생선발)** ① 교내장학생은 학업성적, 재직상태 및 학비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 초에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발한다.

② 교외장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연자의 조건에 따라 선발하고, 조건이 없을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장학생 선발자격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 단, 장

학금 계속 수혜 시 직전학기 성적이 3.0 이상이어야 한다.

**제6조(제출서류)**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학기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재직증명서 1부
2.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

**제7조(장학금액)** 장학금액은 시행세칙에서 정하며, 변동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**제8조(장학금 지급 및 제한)** ① 교내장학생의 장학금은 해당 학기 등록 시 차감 납부하게 하며, 제9조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각종 장학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1개 종목에 한하며 이종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되었을 때는 그 중 유리한 것을 수혜하며, 교외장학, 원외회 간부장학 및 기타장학금은 이종 수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③ 장학금 중복 수혜 시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(입학금 포함)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**제9조(장학금의 지급 중지)** ①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
1.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
2. 자퇴 또는 제적되었을 때
3. 장학금 수혜신청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
4.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이 3.0 미만일 때
5. 기타 장학금 지급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

② 전항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제4호에 의거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 후 기준 성적 이상을 취득한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**제10조(장학금의 반환)** ① 장학금 수혜 학생이 제9조에 해당되는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② 교외장학생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학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연자의 조건에 따라 처리한다.

**제11조(사무관장)** 장학에 관한 사무는 항공우주정책대학원 행정실에서 관장한다.

**제12조(지급보고)**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은 장학금 지급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시행일) 이 변경 규정은 202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하되, 2024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24.11.4.>

항공우주정책대학원 장학금액 및 지급대상

장학종류	장학금액	지급대상
특별장학	A 수업료의 50%	-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직원 - 대한항공(KAL) 임직원
	B 수업료의 40%	-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(협력업체 포함) 임직원 - 한진그룹 계열사 임직원(대한항공 제외) - 한국항공협회 임직원 - 고양시 공무원 - 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한 기관 중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 - 국내항공사 및 항공 관련 주요기관 임직원으로서 항공우주정책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
공로장학	수업료 이내	대학 및 대학원 발전에 공헌한 자 중에서 항공우주정책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선발한 자
교직원장학	수업료 전액	본 대학교 교직원
원우회간부장학	수업료의 일부	원우회 간부로서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
학비보조장학	수업료의 30%	- 항공 관련 종사자 - 고양시 이외 공무원 - 호텔 관광 물류 업종 관련 종사자 - 업종 구분 없는 재직자, 고양시 거주자 등 항공우주정책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
군위탁장학	등록금의 50%	교육부 장관이 교육을 의뢰한 자
성적우수장학	수업료의 20%	직전학기 성적이 4.0 이상인 학생 중 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(전공별 2명 이내)
외국인 특별장학	수업료의 50%	외국인전형 입학생 및 재학생
기타 장학	별도로 정함	대학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에 의해 지급하는 장학금

※ 주 1)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의 합을 의미함

※ 주 2) '특별장학B'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업체 임직원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사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